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91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이강일 · 김 윤 · 황운하
송재봉 · 민병덕 · 박희승
허 영 · 김문수 · 이훈기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금품등을 받거나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식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처벌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취하고 있음.

제재 대상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고,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음에 따라 공직자등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 조항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

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9조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배우자는”을 “배우자등(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배우자에게”를 “배우자등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배우자가”를 각각 “배우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등이”로, “배우자로”를 “배우자등으로”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배우자가”를 각각 “배우자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에게”를 “배우자등에게”로 한다.

-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배우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의 배우자등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

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배우자등은 제외한다.

제23조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배우자가”를 각각 “배우자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에게”를 “배우자등에게”로 한다.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배우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등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배우자등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략)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배우자등(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⑤ -----배우자등에게----- ----- ----- -----.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배우자등이----- -----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

② -----

-----배우자등이-----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배우자등이-----

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
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
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
· 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
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
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
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
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

⑤ -----

-----배우자등이-----

-----.

⑥ (현행과 같음)

⑦ -----

배우자등이-----

-----배우자등으로-----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

1. (현행과 같음)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
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배우
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등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
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
한 배우자등은 제외한다.

[illegible]

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5. (생략)

② ~ ④ (생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

3. -----

-----배우자등
에게-----

4.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를 취소한다.

1. (생략)

<신 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1. (현행과 같음)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
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배우
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등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
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
한 배우자등은 제외한다.

[illegible]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⑦ (생략)	----- -----. 3. ----- ----- ----- ----- -----배우자등 에게----- ----- ⑥·⑦ (현행과 같음)
---	--